

구미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1. . .
발 의 자	장미경 의원 외 6명

구미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(장미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1. . .

발 의 자 : 장미경 · 강승수 · 김낙관 · 안주찬
양진오 · 이선우 · 최경동 의원
(7인)

1. 제안이유

읍·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, 행정정보,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2조)
- 나. 적용범위(안 제3조)
- 다.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(안 제4조)
- 라. 지원기준 및 절차(안 제5~6조)
- 마. 시설 관리(안 제7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다.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1.4.21.~4.28.)결과 의견 없음

구미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읍·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, 행정정보,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“마을방송시스템”이란 구미시 읍·면지역의 주민에게 행정정보 전달, 재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·무선 방송 설비 일체를 말한다.
- 2.“마을”이란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[별표]에 따른 각 리로 하되,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는 제외한다.
- 3.“운영자”란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·관리하는 사람으로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

구미시 관내 마을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4조(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)

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1.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 사항 등의 전달
2.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의 전달
3. 그 밖에 읍·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
제5조(지원기준)

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신규설치,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
2.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하여(노후하여) 교체가 필요한 경우
3. 마을방송시스템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된 경우
4. 천재지변 등으로 마을방송시스템이 소실,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
5.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6조(지원절차)

-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 등 마을 대표자가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읍·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·면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제5조의 지원기준 및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교체 등에 있어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.

제7조(시설 관리)

- ① 시장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관리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- ③ 각 마을에 설치된 스피커는 해당 마을 및 세대에서 관리하며 마을 방송시스템의 관리·운영 비용은 해당 마을에서 부담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

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

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구미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

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마을방송시스템의 신규설치, 교체 등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(안 제5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
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마을방송시스템의 신규설치, 교체 등의 설치비용은 마을의 규모 및 범위에 따라 차등 되므로 소요재정의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- 정보통신과 통신계 박지현(480-6302)